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0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황명선 · 김병주 · 황정아
이정문 · 박지원 · 박용갑
염태영 · 김재원 · 박균택
박 정 · 박정현 · 송옥주
손명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2. 보궐선거·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